

##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 안 번 호	198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'99. 9.  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·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『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』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중구청장이 지정주체가 된다(안 제2조)
- 지정대상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,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, 청소년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, 대여, 유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,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, 관할 지역주민 1,000명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,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된다(안 제3조)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다(안 제4조)
  -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킨다.
  - 청소년통행제한구역 : 동절기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며, 하절기는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.

-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입·출구 도로노면에 출입금지표시, 안내판을 설치한다.

○ 지정절차는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관할 경찰서, 학교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한다(안 제5조)

3. 근거법규 : 청소년보호법 제25조(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의 지정 등)

4. 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○기간 : '99. 8. 9 ~ 8. 28(20일간)

○결과 : 다른의견 없음.

##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,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『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청소년통행제한구역』(이하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정주체)**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제5조에 의거 지정한다.

**제3조(지정기준 및 대상)**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청소년통행금지구역 :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,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2. 청소년통행제한구역 :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,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, 관할 지역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

**제4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**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. 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  
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2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,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부터

다음날 05시까지로 하되,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. 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지정절차)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,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 
②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·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정해제)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)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.  
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) ①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·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  
②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조체제 유지)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, 학교,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「청소년 통행금지구역 · 통행제한구역」  
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(안)

제 1 조 (목적)

-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「청소년통행금지구역」 또는 「청소년통행제한구역」(이하 「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」이라 함)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제 2 조 (지정기준 및 대상)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음
  - 1. 청소년 통행금지구역
    -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,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
    -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  - 2. 청소년통행제한구역
    -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    -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
    - 관할 지역 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
    -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 3 조 (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)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함.
-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,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 
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함.

#### 제 4 조 (지정 절차)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,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.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·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함.

#### 제 5 조 (지정해제)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함.

#### 제 6 조 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)

-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함.
-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,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함.

#### 제 7 조 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)

-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-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#### 제 8 조 (협조체제 유지)

-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·학교·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함.

#### 제 9 조 (시행규칙)

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## 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198)

###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

#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9. 6.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9. 9. 7.
- 라. 위원회 심사 : '99. 9. 14.

#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산업국장 정을출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·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「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」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중구청장이 지정 주체가 된다.
- 지정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,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등의 판매, 대여, 유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, 관할 지역주민 1,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,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된다.
-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키며,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동절기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며 하절기는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.

-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입·출구 도로노면에 출입금지표시,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지정절차는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관할 경찰서, 학교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한다.

다. 근거법규

- 청소년보호법 제25조(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의 지정 등)

라. 제정조례 : 별첨

**4. 검토보고 요지**

- 청소년 유해 환경 요인들이 다소 밀집해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볼 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의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사료됨.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